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8호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03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 1039 호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6
○ 공	고 제 1043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19수용0359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8
○ 공	고 제 1049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이화어린이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9
○ 공	고 제 1053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1
○ 공	고 제 1056 호	보상계획열람공고(산밀말 근린공원 조성사업)	13
○ 공	고 제 1068 호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6
○ 보 건 소 공 고 제	4 8 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19
○ 간 석 1 동 공 고 제	5 7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1

고 시

○ 고	시 제 6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23
○ 고	시 제 6 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38
○ 고	시 제 6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4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객 제공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제1항 : 남동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680, FAX 453-28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객 제공에 대한 운영·관리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객에 제공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추진(안 제19조의2)
 - 주차요금, 이용 시간 및 대상 차량 등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1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10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5. 24. ~ 2019. 6. 8.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내역 따로붙임’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로명주소팀(☎032-453-2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시 송 달 조 서

연번	구분	성명	통보대상자 주소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	통보 내용	사유
1	소유자	채*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송로31번길 28-13(주안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71(장수동)	101,201,301	폐문부재
2	소유자	문*석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로 190-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22(도림동)	101,201,202,203,204,301,302,303,304	폐문부재
3	소유자	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69,5동 907호(상계동, 임광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도림동)	101,201,202,304,302,401,402	폐문부재
4	임자인	김*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5-1(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5-1(도림동)	101,102,103,201,202,203,301,302,303,401	폐문부재
5	임자인	이*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8,04호(도림동,해피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8(도림동)	101,102,201,202,203,204,301,302,303,304,401,402	폐문부재
6	임자인	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송남로33번길 30-5,802호(만수동, 우영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송남로33번길 30-5	지하101,지하102,101,102,201,202,301	폐문부재
7	임자인	박*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송남로33번길 30-5,801호(만수동, 우영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송남로33번길 30-5	지하101,지하102,101,102,201,202,301	폐문부재
8	임자인	김*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8,302호(도림동,해피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8(도림동)	101,102,201,202,203,204,301,302,303,304,401,402	폐문부재
9	임자인	김*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9 403호(도림동,탑스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9(도림동)	101,201,202,203,204,205,301,302,303,304,305,401,402,403,404,501	폐문부재
10	임자인	김*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4-1,301호(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4-1	101,102,103,201,202,301,302	폐문부재
11	임자인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1번길 7-7,102호(도림동, 윤정하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1번길 7-7(도림동)	101,201,301,302,401	폐문부재
12	임자인	강*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201호(도림동, 보하하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도림동)	101,201,301,302,401,402	폐문부재
13	임자인	신*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202호(도림동, 보하하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도림동)	101,201,301,302,401,402	폐문부재
14	임자인	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301호(도림동, 보하하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도림동)	101,201,301,302,401,402	폐문부재
15	임자인	이*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302호(도림동, 보하하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3(도림동)	101,201,301,302,401,402	폐문부재
16	임자인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7,402호(도림동, 보하하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7(도림동)	101,201,301,302,401	폐문부재
17	소유자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7,201호(도림동, 보하하우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7(도림동)	101,201,301,302,401	폐문부재
18	임자인	이*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9 301호(도림동,탑스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19(도림동)	201,202,203,204,205,301,302,303,304,305,401,402,403,404,501	주소불명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4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대공원 조성사업(19수용0359)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5. 27.

남 동 구 청 장

- ☐ 사 업 명 :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 ☐ 열람기간 : 2019. 5. 27. ~ 2019. 6. 10.
-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남동구 소래로 633), ☎ 032-453-6143
- ☐ 의견제출기간 : 2019. 5. 27. ~ 2019. 6. 1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68, 468-1번지 총 2필지
 - 토지소유자 : 최명덕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329번길 28(주안동))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68, 468-1번지 느릅나무 등 8건
-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1049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이화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열람 · 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이화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이화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	시설면적		면적 (㎡)	시설면적		
					면적 (㎡)	시설율 (%)		면적 (㎡)	시설율 (%)	
변경	이화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간석동 439	6,978.2	3,813.57	54.6	6,978.2	3,048.50	43.7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이화 어린이 공원	- 시설률 변경 - 기 정 : 3,813.57㎡ - 변 경 : 3,048.50	대상지 현황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6,978.20	100	6,978.20	100	
기 반 시 설	1,452.31	20.8	1,465.60	21.0	
도 로	683.10	9.8	777.70	11.1	
광 장	769.21	11.0	687.90	9.9	
조 경 시 설	103.48	1.5	60.44	0.9	
휴 양 시 설	179.76	2.6	777.66	11.1	
유 희 시 설	432.00	6.2	334.30	4.8	
운 동 시 설	1,604.00	23.0	346.70	5.0	
교 양 시 설	-	-	-	-	
편 익 시 설	42.02	0.6	61.60	0.9	
관 리 시 설	-	-	2.20	0.0	
기 타 시 설	-	-	-	-	
녹지 및 기타	3,164.63	45.4	3,929.70	56.3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285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53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마9964, **가0801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5.27.(월) ~ 6.11.(화)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5.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5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마9964	미*준	2019-05-27	기타	전조등 착색	2153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2	**가0801	홍*화	2019-05-27	기타	리플렉터 LED	21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 *동 ***호(간석동, **빌라)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056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산밧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근린공원]
 - 명 칭 : 산밧말 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산밧말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 1-2	29,545

4. 보 상 시 기 : 별도 보상통보(개별통지)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6. 보상대상 ※ 조서 참조
 - 토지보상 : 만수동 산 1-2 일부
 - 지 장 물 : 공원조성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7.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8.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공탁
9.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5. 28. ~ 2019. 6. 11. (15일간)

10.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원녹지과에 문의(☎032-453-6143)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지 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만수동 산 1-2	임 야	220,10 3	29,54 5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만수동 산 1-2	주 택	시멘벽돌조/기와	132.40	㎡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2		주 택	시멘벽돌조/기와	7.98	㎡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3		창 고	시멘벽돌조/기와	18.48	㎡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4		창 고	샌 드 위 치 판 널	1.0	㎡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5		바 닥 포 장	판 석	16.48	㎡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6		담 장	콘 크 리 트	9.6	m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7		계 단	자 연 석	1	개소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8		구 조 물	콘 크 리 트	1	개소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9		수 도		1	개소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10		대 문	철 재	1	개소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11		발		778.05	㎡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12		자연석쌓기	자 연 석	44.5	m	김*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	
13		창 고	컨 테 이 너	5.28	㎡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14		창 고	컨 테 이 너	18.3	㎡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15		창 고	샌 드 위 치 판 널	13.5	㎡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16		가 로 등	H 3 . 0 이 상	2	개소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17		철 봉	철 재	1	개소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18		지주 및 네트		3	개소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		의 자	목 재	5	개소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		안 내 판	철 재	1	개소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1		철 문	철 재	1	개소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2		휠 스	H1.8 x W2.0	1	개소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3		교 목	측 백 나 무 외	105	주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4		관 목	철 쪽 외	500	주	나*영(배드민턴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5		창 고	컨 테 이 너	20.15	㎡	게이트볼 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6		배 수 로	트 렌 치 W300	31.0	m	게이트볼 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7		등 의 자	목 재	4	개소	게이트볼 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8		평 의 자	목 재	1	개소	게이트볼 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29		게 이 트	철 재	4	개소	게이트볼 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30		안 내 판	철 재	1	개소	게이트볼 클럽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1068호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9. 5. 3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19. 1. 1. 기준
- 대 상 : 42,884필지
- 결정·공시일 : 2019. 5. 31.
-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9. 5. 31. ~ 7. 1.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방 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2~6153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	---------------	--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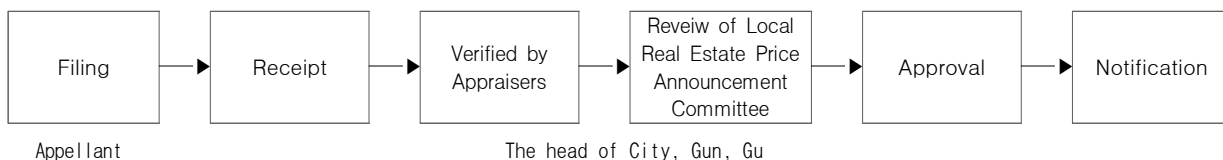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48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5.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30. ~ 2019. 6. 19. (20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2-453-5072)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고지금액	반환기일	비고
1	보관금-원천공제액	2012-12-31	2012년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원천공제액 납부 소급등록	보건행정과	6,261,380	2014-05-30	

공 고

남동구 간석1동 공고 제2019-5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5. 31.

남 동 구 간 석 1 동 장

가. 공고기간 : 2019년 05월 31일 ~ 2019년 05월 21일(21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역 : 별첨 참조

다. 안내사항

1.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인천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032-453-6321, 6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역

부서명	과목명	부과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상태	부과구분	부과일자	최종납기일자	부과금액	부과대상	우편번호	주소
간석1동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000029-00	지○주	거주자	수시분	2019-05-01	2019-05-31	100,000	2019.03.26. 16:45경, 규격봉투 미사용 (남동대로897번길 15 앞)	22356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 (운북동)
간석1동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000038-00	김○영	거주자	수시분	2019-05-01	2019-05-31	100,000	2019.03.29. 16:20경, 규격봉투 미사용 (구월로52번길 27 앞)	22780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7번길 ○,○○동 ○○호 (신현동, ○○아파트)
간석1동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000039-00	강○범	거주자	수시분	2019-05-01	2019-05-31	100,000	2019.04.01. 14:14분경, 규격봉투 미사용 (문화로169번길 40-15 앞)	215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 ○○호 (간석동)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64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9. 6. 3.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19. 5.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첨부]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세대수 과다 따른 통 세대 수 조정
- 통·반 구역관리의 편의 및 구역 정형화를 통한 통반 조정
- 도시형생활주택 입주 예정지역의 통·반 분할 조정 실시

I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내지 10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Ⅱ 조정 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 적용
 - 반 : 30내지 100세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Ⅲ 조정 사유

- 세대수 불합리에 따른 일부 통장의 통·반 조정 건의
- 일부 통·반 구역관리의 편의 및 구역 정형화를 위한 통·반 조정
-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에 의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통·반 조정

Ⅳ 통·반 세부 조정내역

- 총괄현황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 동 구	872	3,773	+2	-2	874	3,771	▶ 41통, 42통(2개통) 신설 ▶ 기존 7개반 감소 ▶ 통증가로 5개반 신설
만수2동	40	159	+2	-2	42	157	

● 세부내역(※ 구역도는 붙임 참조)

현행				조정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18통	소계		259	18통	소계		220	통·반구역조정
	1	만수로105번길 18-18, 아주아파트 가동 101-510	48		1	만수로 75번길 52,54,56,58,60,62,66,68	10	
	2	만수로111번길 7, 11, 13, 13-1, 17(한일빌라), 19(만수그린빌), 23, 29	52		2	만수로111번길 7, 11, 13, 13-1, 17(한일빌라), 19(만수그린빌), 23, 29	51	
	3	만수로75번길 74-2, 강남맨션10-1동 만수로75번길 76-2, 강남맨션110-2동 만수로75번길 74, 강남맨션104동 만수로75번길 76, 강남맨션105동 만수로75번길 74-1, 강남맨션106동 만수로75번길 76-1, 강남맨션107동 만수로75번길 84, 강남맨션108동	79		3	만수로75번길 74-2, 강남맨션10-1동 만수로75번길 76-2, 강남맨션110-2동 만수로75번길 74, 강남맨션104동 만수로75번길 76, 강남맨션105동 만수로75번길 74-1, 강남맨션106동 만수로75번길 76-1, 강남맨션107동 만수로75번길 84, 강남맨션108동	79	
	4	만수로75번길 70-3, 강남맨션101동 만수로75번길 70-2, 강남맨션102동 만수로75번길 70, 강남맨션103동 만수로75번길 70-1, 강남맨션109동 만수로75번길 70-5, 강남맨션111동 만수로75번길 70-4, 강남맨션112동	80		4	만수로75번길 70-3, 강남맨션101동 만수로75번길 70-2, 강남맨션102동 만수로75번길 70, 강남맨션103동 만수로75번길 70-1, 강남맨션109동 만수로75번길 70-5, 강남맨션111동 만수로75번길 70-4, 강남맨션112동	80	
19통	소계		319	19통	소계		206	통·반구역조정
	1	만수로105번길 18-6, 아주아파트 나동 101-510	49		1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라동 101-607	39	
	2	만수로105번길18-6, 아주아파트 다동 101-513	64		2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라동 108-614	38	
	3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라동 101-607	39		3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마동 101-610	66	
	4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라동 108-614	38		4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마동 111-621	63	
	5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마동 101-610	66					
	6	만수로 97, 아주아파트 마동 111-621	63					

현행				조정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28통	소계		207	28통	소계		165	통·반구역조정
	1	만수로94번길 13-2, 13-3, 13-4, 13-5, 13-6, 13-8, 17, 19-3, 19-5, 19-6, 19-7, 19-8, 21, 23-7 만수로 100번길 14, 16, 20	72		1	만수로94번길 13-2, 13-3, 13-4, 13-5, 13-6, 13-8, 17, 19-3, 19-5, 19-6, 19-7, 19-8, 21, 23-7 만수로 100번길 14, 16, 20	72	
	2	만수로88번길 19, 19-3, 19-5, 19-6, 19-9, 21 만수로94번길 22, 23-4, 23-8, 만수로100번길 22, 24, 26	26		2	만수로88번길 19, 19-3, 19-5, 19-6, 19-9, 21 만수로94번길 22 만수로88번길 13, 15-3, 15-4, 15-5, 15-6, 15-7, 15-8, 17 만수로94번길 16, 18	22	
	3	만수서로 97-17 만수로88번길 13, 14, 14-1, 15-3, 15-4, 15-5, 15-6, 15-7, 15-8, 17, 18, 18-1 만수로94번길 16, 18	55		3	수현로119번길 20, 26, 30, 32, 만수로88번길 23, 만수로94번길 23-4, 23-8, 26 만수로100번길 22, 24, 26	71	
	4	수현로119번길 20, 26, 30, 32, 만수로88번길 23, 만수로94번길 26	54					
29통	소계		208	29통	소계		215	통·반구역조정
	1	만수서로 97-14(신한아파트 1동)	38		1	만수서로 97-14(신한아파트 1동) 만수로88번길 14, 14-1, 18, 18-1 만수서로 97-17	80	
	2	만수서로 97-14(신한아파트 2동)	51		2	만수서로 97-14(신한아파트 2동)	51	
	3	만수서로 97-14(신한아파트 3동), 101(신한상가)	68		3	만수서로 97-14(신한아파트 3동), 101(신한상가) 만수로 76, 78, 80 만수서로 87, 89, 93-7, 97, 97-7,	84	
	4	수현로119번길 13, 19, 21, 25, 27, 29, 31(송원빌라) 만수로88번길 29	51					

현행				조정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31통	소 계		231	31통	소 계		205	통·반구역조정
	1	만수로 76,78,80 만수서로 87,89,93-7	16		1	만수로 75번길 8, 16,18,18-1,20,20-1,24,26, 만수로 79,81,85, 85-1,87,91,91-1, 만수로 93번길 11,13 만수로 75번길 30,32,34, 36,40,42,44,46,48	54	
	2	만수로 75번길 8, 16,18,18-1,20,20-1,24,26, 만수로 79,81,85, 85-1,87,91,91-1, 만수로 93번길 11,13	37		2	만수로 105번길 23 (아주아파트 바동 101~608)	50	
	3	만수로 75번길 30,32,34, 36,40,42,44,46,48,52,54, 56,58,60,62,66,68	27		3	만수로 105번길 23 (아주아파트 바동 109~616)	47	
	4	만수로 105번길 23 (아주아파트 바동 101~608)	50		4	만수로 105번길 23 (아주아파트 사동 101~609)	54	
	5	만수로 105번길 23 (아주아파트 바동 109~616)	47					
	6	만수로 105번길 23 (아주아파트 사동 101~609)	54					
40통	소 계		235	40통	소 계		111	통·반구역조정 ※ 기존 29통 4반과 40통 3반으로 40통 구성 ※ 향후 다세대 12세대 및 오피스텔 39세대 입주
	1	만수로 100번길 13, 만수로 100번길 15(무궁화주택 3호), 만수로 100번길 15-3,15-6, 만수로 100번길 23(파크원 52) 수현로 119번길 4-3,4-5,4-7,8, 수현로 123,125 수현로 127(거명하이츠 A동), 수현로 129(거명하이츠 B동)	84		1	수현로 119번길 13,19,21,25,27,29,31(송원빌라) 만수로 88번길 29	51	
	2	만수로 100번길 17 만수로 100번길 19(파크원 26) 만수로 100번길 23(파크원 52)	40		2	만수서로 105번길 21,25,27,29, 31-2,31-3,31-4,33,37, 37-3,37-4,37-5,39,41,41-1, 45,47,47-1,수현로 117	60	
	29통 4	수현로 119번길 13,19,21,25,27,29,31(송원빌라) 만수로 88번길 29	51					
18통	소 계		161	41통	소 계		161	신설
19통	1	만수로 105번길 18-18, 아주아파트 가동 101-510	48		1	만수로 105번길 18-18, 아주아파트 가동 101-510	48	
	1	만수로 105번길 18-6, 아주아파트 나동 101-510	49		2	만수로 105번길 18-6, 아주아파트 나동 101-510	49	
	2	만수로 105번길 18-6, 아주아파트 다동 101-513	64		3	만수로 105번길 18-6, 아주아파트 다동 101-513	64	
40통	소 계		124	42통	소 계		124	신설 ※ 기존 40통 1,2반을 42통 신설하여 편성 ※ 기존 40통 1반 만수로 100번길 23(파크원 52)을 42통 2반으로 편성
	1	만수로 100번길 13, 만수로 100번길 15(무궁화주택 3호), 만수로 100번길 15-3,15-6, 만수로 100번길 23(파크원 52) 수현로 119번길 4-3,4-5,4-7,8, 수현로 123,125 수현로 127(거명하이츠 A동), 수현로 129(거명하이츠 B동)	84		1	만수로 100번길 13, 만수로 100번길 15(무궁화주택 3호), 만수로 100번길 15-3,15-6, 수현로 119번길 4-3,4-5,4-7,8, 수현로 123,125 수현로 127(거명하이츠 A동), 수현로 129(거명하이츠 B동)	45	
	2	만수로 100번길 17 만수로 100번길 19(파크원 26)	40		2	만수로 100번길 17 만수로 100번길 19(파크원 26) 만수로 100번길 23(파크원 52)	79	

구분	만수2동 19통 구역도
현 행	
조 정 후	

※ 사유 : 19통 전체 6층 아파트로 승강기가 없어 통장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따라 적정세대수 조정을 위한 통반구역 변경을 하고자 함.

※ 기존 19통1반 및 2반을 41통으로 신규 편성

구분	만수2동 28통 구역도
현 행	
조 정 후	

※ 사유 : 통별세대수 조정 및 구획정리

※ 기존 만수서로88번길 14, 14-1, 18, 18-1, 만수서로 97-17을 29통 1반으로 편성

구분	만수2동 29통 구역도
현 행	
조 정 후	

- ※ 사유 : 28통, 31통구역 정리에 따른 후속 통반조정
 ※ 기존 29통 4반을 42통으로 신규 편성
 ※ 기존 28통3반 중 만수로88번길 14, 14-1, 18, 18-1, 97-17 29통1반으로 편성
 ※ 기존 31통1반 중 만수로 79, 78, 80, 27통 중 돌곶공원, 상개(만수서로 95, 97, 97-7) 29통3반으로 편성

구분	만수2동 31통 구역도
연 행	

조
정
후

※사유 : 일반주택의 경우 다세대 주택으로 승강기가 없어 통장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따라 일반주택 통분리를 통한 세대수 조정을 하고자 함.

※ 기존 31통1반을 29통 1반으로 편성

※ 만수로75번길 52,54,56,58,60,62,66을 18통 1반으로 편성

구분	만수2동 40통 구역도
현 행	
조 정 후	

※ 사유 :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으로 인한 세대수 조정 및 통구획 정리

※ 기존 40통1반, 40통 2반 일부구역을 42통으로 신규 편성

※ 기존 29통4반 및 40통 일부구역을 40통 1반 및 2반으로 편성

구분	만수2동 41통 구역도
현 행	
조 정 후	

※ 사유 : 기존 19통 세대수 조정에 따른 신규통(41통) 개설

※ 기존 18통1반, 19통1반, 19통2반을 41통 1·2·3반으로 신규 편성

구분	만수2동 42통 구역도
현 행	
조 정 후	

※ 사유 :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으로 인한 세대수 조정 및 통반구획 정리

※ 기존 40통1반 및 40통2반 일부구역을 42통 1· 2반으로 신규 편성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6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38 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38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4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마산로	134-8	2009.11.16.	옛날에 장군이 숨어있었다는 산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마산로 134-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4-8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플무로	38	2009.11.16.	풍무밭하여 쇠를 녹이던 곳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플무로 3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8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8	2014.07.25	선수촌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17번길 1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8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04-3외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43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128번길 4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3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7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7-14	2011.3.24	도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도림로49번길 7-1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14를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38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28번길 3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8를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1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98번길	26	2009.11.16.	수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골로98번길 2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6를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88-1외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19	2009.11.16	주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주안로259번길 1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2	인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38(간석동)	2019.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24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36(간석동)	2019.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0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41(고잔동)	2019.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35번길 13(구월동)	2019.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40(구월동)	2019.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8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21(간석동)	2019.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8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19(간석동)	2019.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6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72번길 2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랐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총천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 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23	2009.11.16.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372번길 2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3을 건물번호로 부여	